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의안번호 : 제2827호

나. 발 의 자 : 최기찬 의원

다. 발의일자 : 2021. 10. 15.

라. 회부일자 : 2021. 10. 20.

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의안번호 : 제2850호

나. 발 의 자 : 김용연 의원

다. 발의일자 : 2021. 10. 15.

라. 회부일자 : 2021. 10. 20.

II. 제안이유

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827호)

-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사는 독재와 절대 권력에 맞서 대한민국의 변혁을 이끌어 온 자랑스러운 역사로서,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의의는 헌법 전문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계승·발전되어야 함.
- 그러나 민주화운동사는 교과 편제상 최후반부에 배치되어 학기말에 교육이 이루어져 체계적인 학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이에 내실 있는 민주화운동사 교육을 통하여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의의 계승·발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담고자 함.

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850호)

- 주변국의 역사왜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역사교육은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으며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역사교육은 국민의 정체성 함양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춘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참된 역사교육이 필요함.
- 학생들이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민주시민교육에 역사교육 지원에 필요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827호)

- 학교민주시민 교육에 광복 이후 독재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민주화운동의 역사 교육에 관한 내용을 담고자 함(안 제5조제7호).

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850호)

- 학교민주시민교육에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관점에서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역량 함양에 관한 내용을 담을 것을 규정함(안 제5조제7호).
-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역사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할 것을 규정함(안 제6조제2항제5호).
- 학교민주시민교육센터의 기능에 역사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9조제2항제5호).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의안별 별첨

3. 기 타

○ 입법예고 : 2021. 10. 25. ~ 11. 1.(제출의견 464건)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의안번호 제2827호 및 의안번호 제285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15일 최기찬 의원과 김용연 의원에 의해 각각 발의되어 2021년 10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상기 개정조례안은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광복 이후 독재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민주화운동의 역사교육을 포함하는 등 학생들로 하여금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 및 조문에 대한 검토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제2조제2호에서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을 각급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같은 조례 제5조에 ‘학교민주 시민교육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¹⁾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각급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하 “학교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5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기본권 보장,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관한 지식

2. 논쟁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방식, 비폭력 갈등 해소 방안, 설득과 경청 등에 관한 기능과 태도

3. 단위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

4.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이에 따라 안 제2827호(최기찬 의원안) 제5조제7호는 ‘광복 이후 민주화운동의 역사’ 를, 안 제2850호(김용연 의원안) 제5조제7호는 ‘민주·평화적인 관점의 역사관 정립’ 을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표]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안 제5조제7호)

안 제2827호(최기찬 의원안)	안 제2850호(김용연 의원안)
제5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 ----- 1. ~ 6. (현행과 같음)	제5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 ----- 1. ~ 6. (현행과 같음)
7. 광복 이후 독재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민주화운동의 역사	7.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관점에서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역량 함양

- 먼저 안 제2827호와 관련하여 ‘민주화운동’ 은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 헌정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 인바²⁾,

안 제5조제7호에서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교육내용으로 규정함으로써 헌법 전문에 명시된³⁾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역사적 가치를 인식하고 계승하도록 한 것은 동 조례 취지에 부합한 입법조치라 사료됩니다.

- 한편 안 제2850호와 관련하여 안 제5조제7호는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가치판단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민주주의적 가치와 생활태도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것으로,

5. 지방자치분권의 기본원리와 이해, 주민의 권리 및 참여를 위한 의사 소통과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 조정과 문제해결 등의 역량과 자질 함양

6. 선거의 의미·기능, 선거법 및 선거제도의 이해, 공약의 비교·분석 및 토론 등 선거법령에 따른 선거 전반에 관한 내용

2) 네이버 국어사전

3)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후략)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변국들의 역사 왜곡 상황에서⁴⁾ 학생들의 토론과 논쟁, 공감과 합의과정을 통해 민주적 역사교육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 생각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두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민주시민생활교육과-29225, 2021. 12. 7.).
- 다만 안 제2850호의 안 제6조제2항제5호 및 제9조제2항제5호는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및 민주시민교육센터의 기능에 역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동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서는 이미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및 민주시민교육센터의 기능에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있고, 또한 안 제5조제7호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으로 이미 역사교육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 이는 동일 조례에 동일한 내용을 중복하여 규정한 것으로 대안 마련 시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입법예고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

- 한편 두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동 개정조례안이 역사를 왜곡하는 시도라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464건⁵⁾ 접수되었습니다.
- 그러나 동 개정조례안은 역사교육의 내용을 규정한 것이 아닌 역사교육을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동 입법예고의 의견은 동 개정조례안의 규정과 관련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보도자료: ‘中·日 역사 왜곡’ 심해지는데 정부 대응은 갈수록 미온적(이데일리, 2021.11.14.)

5) 홈페이지 440건, 이메일 21건, 팩스 3건